

의안 번호	2430	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 승인의 건 <b>검 토 보 고 서</b>
----------	------	--

### 1. 검토경과

- 제출일 : 2025. 5. 30.(금)
- 제출자 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예비심사 : 2025. 6. 13.(금), 복지건설위원회
- 회부일 : 2025. 6. 18.(수)
- 심사일 : 2025. 6. 20.(금)

### 2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 및 「울산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」 제11조에 따라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 보고서를 심의·의결 받고자 함

### 3. 주요내용

- 기금 조성 총괄 (단위: 원)

전년도말 조성액(A)	당해연도증감액			당해연도말 조성액 E=A+D
	계 D=B-C	조성액B	사용액C	
319,334,437	3,092,330	75,942,720	72,850,390	322,426,767

### 4. 근거법규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
- 「울산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」 제11조

### 5. 검토의견 : 없음

## 근거법규

###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

- 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**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.
-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, 새로운 비목(費目)을 설치할 수 없다.
-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# 울산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

- 제11조(기금결산)** ①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의회에 제출하고 심의·의결을 받아야 한다